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제1조의3 및 제1조의4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6항”을 “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의 정보제공 요청 등)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료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 업체에 관한 자료

3.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을 위한 방법)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수출식품등 부적합 발생에 따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원인조사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2. 외국 정부에 수출업소등을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3. 외국 정부가 실시하는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지원
4. 수출식품등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제14조제1항에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15의3. 법 제38조제3항제3호 및 제13조의3에 따른 부적합 원인조사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과 현지실사 대응지원

제14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4. 법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부 칙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14조제1항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
외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취급
하는 상호, 주소 등 업체에 관
한 자료
3.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
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
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
원을 위한 방법) 법 제38조제3
항제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
법을 말한다.

1. 수출식품등 부적합 발생에
따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원
인조사 및 개선 사항 등에 대
한 안전관리 지원
2. 외국 정부에 수출업소등을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를 위
한 지원
3. 외국 정부가 실시하는 수출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5. (생략)

<신설>

<신설>

16.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2. (생략)

<신설>

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4. 수출식품등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15의3. 법 제38조제3항제3호 및 제13조의3에 따른 부적합 원인조사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과 현지실사 대응지원

16.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신 설>

3. (생 략)

4. 법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
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
사에 관한 업무

5. (현행 제3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8